

여성가족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복합·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원·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이하 이 표에서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방지업무”를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가정폭력 방지”를 “가정폭력 등 방지”로 하고, 같은 호 긴급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를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 등”으로 하며, 같은 호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방지업무”를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 등”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 관련) 【별표3】 2. 개별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 관련) 【별표3】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이하 이 표에서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 · 보호 시설에 근무하 는 상 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소 · 보호 시설에 근무하 는 상 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 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긴급전화센터 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